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41호

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2015. 8. 1. 부터 시행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6월 5일

우정사업본부장

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조정 고시

1. 새 우편번호 개수 : 34,349개

o 새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: 6,065,129건(2015.5.26. 기준)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: 별표 1
-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·북도 : 별표 2
-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·북도, 강원도 : 별표 3
- 광주광역시, 전라남·북도, 제주특별자치도 : 별표 4
- 참고자료(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, 사서함) : 별표 5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우편팀(☎044-200-8352)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(www.epost.go.kr)의 『새우편번호 안내』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o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데이터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
2. 새 우편번호 사용·변경 등

o 새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(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)에 따라 조정됩니다.

o 새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o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o 기존 6자리 우편번호와 5자리 새 우편번호는 번호체계와 의미하는 지역이 서로 상이한 관계로 병행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.

3. 시행일 : 2015. 8. 1.

4. 참고사항

o 새 우편번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의 새 우편번호 안내 페이지(www.epost.go.kr/search/zipcode/zipcodepost.jsp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(도로명주소-지번주소)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칙

1.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시행일 이후 6자리 우편번호는 폐지한다.